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11. 24 선고 2022가단9425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츠로

담당변호사 이찬승, 정현우, 김지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승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금교륜

변 론 종 결 2022. 11. 3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17. 7. 22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갑 제2호증의 1, 2, 을 제3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(이하 '이 사건 각 지분'이라 한다)을 소유한 사실, D는 2017. 7. 22. 처 E, 자녀 원고, C, F을 두고서 사망한 사실, 피고는 2017. 11. 23.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7. 7. 22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원고는,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분을 취득하는 원인이 된 C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고와 같은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,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지분 중 일부(1/4)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 및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.

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, 2,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C은 2017. 8. 28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상속인 D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재산 포기신고를 하고 위 법원이 같은 해 9. 1. 이를 수리함으로써 상속을 포기한 사실, 이에 C을 제외한 E, 피고, F 세 명만 2017. 11. 15. 이 사건 각 지분을 포함한 피상속인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.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 이에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류승우

[별지]

목 록

1. 고양시 덕양구 G 대 169㎡

2. 고양시 덕양구 G

[도로명주소] 고양시 덕양구 H

세멘부록조 스토리지붕 주택 및 일반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82.11㎡. 끝.

